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5

제안년월일 : 2009. 1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중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보조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삭제(안 제4조)

○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한 준용규정 개정(안 제6조)

3. 근거법령

○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56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4. 입법예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참고자료 : 없음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충주시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
제6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계법령 발췌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56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